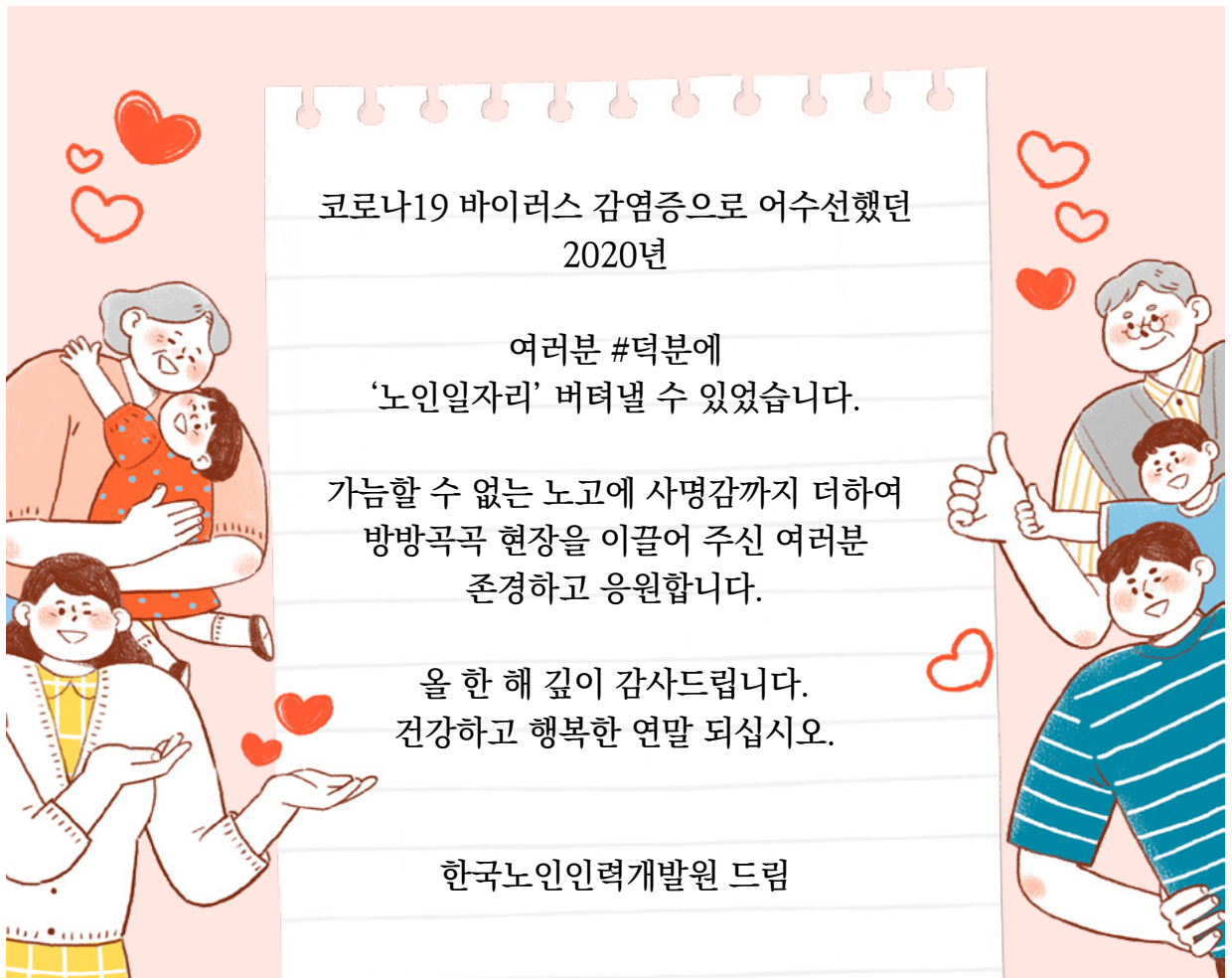


현장이슈+ 경영지원 페이퍼는 노인일자리 업무지원시스템의 경영관리 상담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키워드를 발굴·분석하여, 현장의 궁금증 해결과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4호 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노무) (사회서비스형)참여자의 계속근로
2.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세제 무엇이 개편되었나?
3. (법률) 보조금 이것만 꼭 지키자(II)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이슈+ 경영지원 페이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성장지원부(☎031-8076-34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인사노무 4회차

[노무법인 의연] 2020. 12월

참여자의 계속 근로와 누적활동기간에 따른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운영안내

1 요약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자 관련 이슈사항 안내

2 이슈사항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의 총 활동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누적하여 1년 이상 활동 시 퇴직금 지급 여부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누적하여 1년 이상 활동한 후 퇴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원칙)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 예외 사유가 없거나 예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함
- (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¹⁾

-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제2호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3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5호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6호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고령자’는 만55세 이상을 의미하므로 수행기관이 사업 참여자격²⁾을 갖춘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기근로계약 간주에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는 없음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예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의 퇴직급 지급과 관련하여 ① ‘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적용을 전제한 사업 운영기간을 10개월로 정하고 ②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역할을 하는 수행기관은 사업 운영기간에 맞추어 참여자와 10개월(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하고 있어 익년도 사업 참여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가능성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의무가 없음
-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³⁾”,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매년 대부분의 근로자가 교체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매년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⁴⁾” 등의 입장임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2) 만60세 또는 일부유형 만65세 이상

3) 퇴직연금복지과-1752, 2016. 5. 17.

4) 근로복지과-4742, 2012. 12. 31.

5 근로기준법

- 수행기관에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와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만으로 퇴직하는 참여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매월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되어야 하며, 법 상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11일임
- 참여자가 같은 수행기관에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되는 경우 근무기간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가산연차(최대 25일 한도)도 발생할 수 있음⁵⁾
-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는 수행기관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휴가일수가 아니라 유급시간수로 산정할 수 있음

$$\text{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 \times \frac{\text{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text{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text{시간}$$

- 참여자가 퇴직을 사유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위 방법으로 계산하여 유급처리 시간에 상응하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잔여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거나(이른바 연차 '선사용') 잔여 연차휴가일수만큼 퇴직일을 뒤로 미루어 처리하는 것도 가능

5) 여러 해에 걸쳐 동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연속근로로 보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채용절차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등 새로운 근로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연속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아님

6)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잔여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거나(이른바 연차 '선사용') 잔여 연차휴가일수만큼 퇴직일을 뒤로 미루어 처리하는 것도 가능

제2장 세무회계 4회차

[회계법인 조은] 2020. 12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세무회계 2회차 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금번 경영지원 페이지에서는 시장형사업단 등 소규모 사업장 등에 면제 혜택이 확대되는 부가가치세 세제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편주요내용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매출액
4,800만원



연매출액
8,000만원

납부면제 기준

연매출액
3,000만원



연매출액
4,800만원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으로 세액계산을 하며, 연 1회 확정신고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4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

(1) 감면 대상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닐 것

감면배제사업	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매매·임대업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③ 확정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기한후신고 가능)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액 계산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구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3) 적용 기간

- '20.1월~'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4) 신청 방법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그외 부가가치세법 관련 개정사항

(1)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2)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3)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현실화

-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4)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②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개정) 매입액 × 0.5%

제3장 법률 4회차

[법무법인 연두] 2020. 12월

보조금 이것 만 꼭 지키자(II)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중심으로-

- 보조금 관련 3가지(거짓신청, 용도외 사용, 중요재산 무단처분)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

1 보조금 반환·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은 취소되고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을 하며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환수명령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반환 내지 환수 명령과 함께 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의 5배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됩니다. 그리고 그 징수방법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처분하게 되면 중요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제33조의3(강제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2 벌금 내지 징역형의 형사처벌

위에서 말씀드린 보조금 관련 3가지를 위반했을 때 지급받은 보조금 반환같은 행정처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 예산에서 보조금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에 수사기관에서 2차례 기간을 지정하여 진행하던 보조금 관련 집중 단속행위를 이제는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거짓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용도 외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점점 더 벌칙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자체 내지 개발원과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계약의 해지

마지막으로 3가지를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을 받은 수행기관이나 고령자친화기업은 지자체 내지 개발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이나 이행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지자체나 개발원의 향후 보조사업에도 참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구체적인 사례

[사례 하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공익활동사업 수행기관은 참여자 관리와 관련하여 '비치문서 관리 소홀', '참여자 선발 및 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참여자의 활동관리 대장 허위작성', '참여자의 서명 없이 활동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본 사업 지침을 위반한 사례

하나, 형사처벌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이 참여자의 활동관리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해당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와 수행기관 부대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둘,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처분 및 사업배제

수행기관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과 더불어 반환해야 할 보조금의 5배 내에서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기관은 보조금법 제31조의 2에 따라 공익활동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셋, 위탁계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해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만 멈추지 않고, 지자체는 수행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명분으로 수행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둘] : 용도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조금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기준과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 예를 들어 ①회의비 명목의 보조금을 식비로 지급하거나, ②유류비 집행 내역과 차량운행일지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③사전 승인 없이 과목별 예산의 한도를 초과하여(또는 임의조정하여)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례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행기관이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을 위 사례와 같이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제재와 계약해지는 [사례 하나]와 동일합니다.

[사례 셋]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익활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팀장 ○○○은 실제 팀장이 아니고 명의 대여자인데 2017년 거짓으로 팀장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하여 팀장수당을 지급받은 사례

공익활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팀장 ○○○은 실제 팀장이 아니고 명의 대여자인데 2017년 거짓으로 팀장임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하여 팀장수당을 지급받은 사례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에 따라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보조금법 제43조에 따라 거짓 신청한 자가 속해있는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행기관의 팀장 ○○○은 2018. 0. 0. 자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거짓으로 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팀장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수행기관이 자진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반납하더라도 이미 부정 수급한 시점에 죄가 성립하였으므로 고소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전액 반납한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처벌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넷] :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한 경우

○○○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2013. 12. 7.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국가보조금 2억 5천만원으로 구입하였다. 이후 ○○○은 2014. 12. 7. 보조금으로 구입한 이 기계장비를 개발원의 승인 없이 1억 2천만원에 임의로 처분한 사례

○○○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3호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고, 보조금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이며 개발원과 체결한 '이행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